

---

# KNOW YOUR RIGHTS IN THE SCHOOL DISCIPLINARY PROCESS

## 학교징벌과정에서 당신이 알아야할 권리

---

PRESENTED BY:  
Mindy Turansky  
Liane Wolff



## When can a student be suspended?

- Your child can be suspended for violations of the school district's Code of Conduct. A school may issue a warning, require an in school suspension, keep a student out of school for a period of time or expel a studen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 **The school cannot remove your child from his or her classroom, place your child on a partial-day schedule, or make your child stay at home from school unless the school follows the procedures outlined in the New York State Education Law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e school's own code of conduct.**

## 학생은 어떤 상황에서 징계를 받는가?

- 귀하의 자녀는 해당 학군의 행동 강령을 위반할 경우 정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상황에 따라 경고를 발부하거나, 교내 정학을 요구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 학교가 학교의 자체 행동 강령 또는 뉴욕주 교육법 및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는 자녀를 교실에서 제거하거나, 자녀를 부분일제 일정에 배치하거나,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 **Short-term Suspensions: (five school days or shorter) 단기정학 (5일 또는 그 이하)**

The principal can suspend your child for five days or less for behaviors that are in violation of the code of conduct (sometimes called a principal's suspension).

교장은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 자녀를 5일 이하로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종종 학교장 정학이라고도 함).

# Three Major Rights When Facing a Principal's Suspension

## 학교장 정학시 학생/학부모의 주요권리

1. The right to **Notice** or an explanation of the suspension.
2. The right to request a **Conference** to discuss the suspension.
3. The right to **Alternative Instruction** during the suspension.

1. 통지를 받을 권리 또는 정학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2. 정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요청할 권리.
3. 정학 기간 동안 대안 교육을 받을 권리.

# NOTICE

- Notice is a written letter explaining the suspension.
- Notice must be in writing and must be received by the parent within 24 hours of the principal's decision to propose suspension.
- Notice must be provided in the parent's dominant language.
- Notice must be received prior to commencement of the suspension unless the student's presence in the school poses a continuing danger to persons or property or an ongoing threat of disruption to the academic process
- Notice must include:
  - A clear description of the incident that led to the suspension and the date it occurred.
  - An explanation of your right to request an informal conference with the principal and your right to question "complaining witnesses".

# 서면통지서

- 통지서는 정학을 설명하는 서면 편지입니다.
-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장의 정학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학부모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통지는 부모의 일상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학생의 학교 출석이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학업 과정을 방해할 지속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정학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학으로 이어진 사건과 발생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설명.
  - 교장과의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상대측 "불만을 제기한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에 대한 설명.

# The Right To Request a Conference

- The conference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 incident with the principal and tell your child's side of the story.
- The parent must request the conference – it is not automatic.
- You may bring an attorney or an advocate, but you should give the school advance notice of this.
- You have the right to question witnesses, but you should give advance notice that you wish to do so.
- You may ask to view – or have the principal view- surveillance tapes of the area where the incident occurred, but you should give advance notice of this.

# 회의를 요청할 권리

- 회의에서는 교장과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학부모는 회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 변호사나 변호인을 데려올 수 있지만 학교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 당신은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감시비디오 녹화본을 보거나 교장이 비디오 검토를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 Long Term Suspensions

## 장기 정학

- Only a superintendent can order a suspension of six school days or more.
- Before a student can be suspended for six days or more, the parent must be given written NOTICE and a HEARING.
  
- 교육감만이 6일 이상의 정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6일 이상 정학을 받기 전에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 및 청문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NOTICE

- You must receive written notice of the suspension. This Notice must:
  - be received more than one day before the hearing;
  - be in writing - a phone call is not enough;
  - be in the parent's dominant language;
  - contain a clear description of the incident that led to the suspension with the date it occurred;
  - contain information about the formal hearing date, time and location and your right to participate in the hearing;
  - contain information about your right to be represented by an attorney, or other trusted individual at the hearing;
  - contain an explanation of your right to question complaining witnesses at the hearing;
  - contain an explanation of your right to present witnesses at the hearing.

# 통지서

- 정학결정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통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청문회 하루 이상 전에 전달되어 함;
  - 서면 작성 - 전화 통화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부모의 일상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학을 초래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발생한 날짜를 포함해야 합니다.
  - 공식청문회 날짜, 시간, 장소 및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심리에서 변호사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청문회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청문회에 증인을 출석시킬 권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The Right to a Fair Hearing    공정한 청문회에 대한 권리

- The hearing is automatic and will occur even if you do not attend it. The hearing may be adjourned (postponed) at the parent's request. If you postpone the hearing, the student will remain out of school until the hearing is held.
- The hearing happens in two parts (three if your child is a student with a disability). The fact-finding part of the hearing is where it is determined whether the student committed the alleged offense. The dispositional part of the hearing is where the punishment is determined.
- 청문회는 귀하가 참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청문회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연기하면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 청문회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자녀가 장애 학생인 경우 세 단계). 청문회에서 사실확인 단계는 학생이 혐의를 받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심리의 처분 단계는 처벌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 Your Rights at the Hearing

- Your right to Counsel – you should advise the school of your intention to bring an attorney.
- Your right to present evidence and question witnesses:
  - You and/or your child may testify to tell your side of the story.
  - You may question witnesses – people you trust that saw the event and agree with your version of the facts. Make sure that the witness is available to attend the hearing. If you wish to ask another student to testify, you must get the permission of the student's parent. You may also cross examine witnesses who do not agree with you.
  - You may request a subpoena to compel a witness to testify.

## 청문회에서의 당신의 권리

-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있음을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
  - 귀하 및/또는 귀하의 자녀는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사건을 목격했고,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학생에게 증언을 요청하려면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하기 위해 소환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Your Right to Remain Silent

## 묵비권

- A student has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cannot be forced to answer questions.
- If there are criminal charges, you should consult with a criminal attorney who may advise your child not to testify.
- 학생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질문에 답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귀하의 자녀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조언할 수 있는 형사법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Hearing Waivers

- You may have the right to enter a “no contest” plea at the fact-finding part of the hearing. When you plead no contest, you accept the school’s charges and waive or give up the right to challenge the charges. This eliminates the need for a fact-finding hearing.
- If you plead no contest, you may continue onto the dispositional phase of the hearing, or you may waive that hearing and agree to a suspension length.
- Either way, you must receive a letter confirming the no contest plea and the length of the suspension.

# 청문회 면제

- 당사자는 청문회의 사실확인 단계에서 "노 콘테스트 (반대의견 없음)" 로 항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학교가 주장하는 혐의결정을 인정하거나 혐의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실 확인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청문회 처분 단계를 계속하거나 청문회를 포기하고 정학 기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쪽이든, 당신은 혐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정학 기간을 확인하는 서면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 Dispositional Phase

- In the dispositional phase, the Hearing Officer decides what the punishment will be and how long your child will be suspended.
- Depending on the charges, your child's grade and past behavioral history, the school may recommend immediate reinstatement (your child returning to school immediately) or continued suspension.
- The decision will be based on your child's school records, including grades, progress reports, and information about your child's disciplinary history (e.g., prior suspensions or incidents), if any.
- You have the right to review all of these records before the hearing.
- You may submit any materials to the Hearing Officer that you think would be helpful to show your child in a positive light, including letters from people who know your child.
- The Superintendent must render a written decision within a few days stating the date your child may return to school.
- You may ask the Hearing Officer to recommend non-disciplinary interventions for your child, such as in-school counseling, peer-mediation, or restorative justice.

# 처분단계

- 처분 단계에서 심의 담당관은 어떤 처벌과 자녀의 정학 기간을 결정합니다.
- 혐의, 자녀의 학년 및 과거 행동 기록에 따라 학교는 즉각적인 복학(자녀가 즉시 학교로 복귀) 또는 지속적인 정학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은 성적, 진척 보고서 및 자녀의 징계 기록(예: 이전 정학 또는 사건)에 대한 정보(있는 경우)를 포함한 자녀의 학교 기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 귀하는 심리 전에 이 모든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녀를 아는 사람들의 편지를 포함하여 자녀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료를 청문회 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은 자녀가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날짜를 명시한 서면 결정을 며칠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 청문회 담당관에게 교내 상담, 동료 중재 또는 회복적 사법과 같은 비 징계 중재를 권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lternative Education

- Students who are 16 or younger (17 in some districts) have the right to continue their schoolwork while suspended. Each District provides alternative education in its own way. The parent will have to arrange with the District for this instruction.
- If your child cannot access this instruction without a bus, you should request that transportation be provided.
- The work done while on suspension must b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work done while in school. If your child takes a lab science, the school must provide access to whatever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complete the lab portion of the course.
- If your child is older than 16 or 17 (compulsory school age), the school district does not have to provide alternative education. However, districts will often provide instruction if asked.

# 대안교육

- 16세 이하(일부 학군의 17세) 학생은 정학 기간 동안 학업을 계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학군은 자체 방식으로 대안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부모는 이 교육을 위해 교육구와 협의해야 합니다.
- 자녀가 버스 없이 이 교습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교통편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 정학 기간 동안 수행한 학업내용은 학교에서 수행한 학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자녀가 실험 과학을 수강하는 경우 학교는 학교과정의 실험 부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자녀가 16세 또는 17세(필수 교육 연령) 이상인 경우 해당 학군은 대안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대안학습을 제공할 것입니다.

# Appealing the Decision 결정에 대한 항소

- You have the right to appeal the Decision of the Superintendent if you believe that your rights were violated.
- The appeal process is governed by the rules of the school board, which sets timelines and procedures.
- To appeal the decision, you will need to request the hearing transcript.
-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교육감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항소 절차는 일정과 절차를 정하는 교육 위원회의 규칙에 따릅니다.
- 결정에 항소하려면 심리 기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 Students with Disabilities 장애학생

-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attend public school, and those who are suspected of having a disability, are subject to a school district's regular discipline procedures with additional protections.
- These students have the right to a manifestation determination hearing after the fact-finding phase and before the dispositional phase of the hearing.
- 공립 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과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은 추가 보호 조치가 포함된 교육구의 정규 징계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이 학생들은 사실확인 단계 이후와 심리의 처분 단계 이전에, (장애)징후근거 결정검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Manifestation Determination Review (MDR)

- The MDR is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student's disability and the behavior subject to the disciplinary action; it's required when a discipline sanction could result in a change of placement.
- The review must be conducted by the district, the parents, and relevant members of the IEP team.
- The parent must receive written notice of the MDR.
- The MDR determines two questions:
  - **1. Was the behavior in question caused by or did it have a direct and substantial relationship to the student's disability?**
  - **2. Was the behavior in question the direct result of the school district's failure to implement the student's IEP?**
- MDR은 학생의 장애와 징계조치를 받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징계 조치로 인해 배치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필요합니다.
- 검토는 학군, 학부모 및 IEP 팀의 관련 구성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 부모는 MDR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 MDR은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결정합니다.
  - **1. 문제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었습니까?**
  - **2. 문제의 행동이 해당 학군이 학생의 IEP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였습니까?**

## Results of MDR

- If the MDR determines that there was a positive nexus, meaning that the student's behavior was connected to the disability or was caused by the District's failure to implement the IEP, then the student must return to school. In addition, the CSE must conduct a 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FBA) and implement a behavior intervention plan (BIP).
- If the District failed to implement the IEP, the District must take immediate steps to remedy the deficiencies that caused this failure.
- If there is no nexus found, the District may proceed to the dispositional phase and impose a long term suspension.

## 장애징후근거결정

- MDR에서 학생의 행동이 장애와 관련이 있거나 학군의 IEP 이행 실패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음이 인정되면, 학생은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CSE는 기능적 행동 평가(FBA)를 수행하고 행동 중재 계획(BIP)을 구현해야 합니다.
- 학군이 IEP를 구현하지 못한 경우 학군은 이러한 실패의 원인이 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연결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교육구는 처분 단계를 진행하고 장기 정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Student Removal to IAES with Positive Nexus

## 장애와 사건 연결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학생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배치하는 경우

In certain circumstances, even if there is a positive nexus, the student may not be permitted to return to school for up to 45 days. This would include situations in which the violation of the code of conduct involved:

- infliction of serious bodily injury;
- possession of a weapon;
- possession, use or sale of drugs

- 특정 상황에서 장애와 사건이 연결성이 있더라도 학생은 최대 45일 동안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 강령 위반이 포함됩니다.
  - 심각한 신체 상해의 가해;
  - 무기 소지;
  - 마약의 소지, 사용 또는 판매

# Appeal 항소

The MDR decision may be appealed through the impartial hearing process.

MDR 에서의 결정은 공정한 심리 절차를 통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